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나76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현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5. 3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6252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접수 제108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산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0. 21. 접수 제22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15줄 ‘유일한’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쪽 1줄 ‘차원에서’ 다음에 ‘상당한 가격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쪽 10줄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8쪽 (나) ②(8쪽 아래 5줄에서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는 위 근저당권이 J의 퇴직금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는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피고가 J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2. 31.부터 2022. 2. 23. 사이에 6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J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거래내역서만 있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전경민, 판사 김동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L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8.32㎡(주차장)

2층 134.39㎡(2세대)

3층 134.39㎡(2세대)

4층 126.83㎡(2세대)

5층 118.13㎡(2세대)

옥탑 8.39㎡(연면적 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1. 서울특별시 동작구 K 대 225.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4층 M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51.5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25.1분의 24.69

2. 충청남도 공주시 N 임야 4265㎡

3. 충청남도 공주시 O 임야 30425㎡, 끝.

